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4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09. 12.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교환기능, 전송기능, 일반지원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의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의무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송역무

-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 나. 시내전화서비스: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으로부터 시외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다. 시외전화서비스: 시외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내측 종단점에서 국제전화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 라. 국제전화서비스: 국제교환기에 접속된 회선의 시외측 종단점 이

후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용 단말기와 동단말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 114호등에 따라 이용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사. 전화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ISP간 인터넷호의 교환이나, 타 ISP의 호를 제 3 ISP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카. 인터넷전화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구내통신서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파. 기타전송서비스: 가입통신서비스 등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전송서비스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800MHz 또는 1.7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다. 무선호출서비스: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

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 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차. 와이브로: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가목부터 차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내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통화권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방송용등 특수한 용도의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

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형태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제5조(회계정리단위) 사업자는 지역 또는 현업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산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분리하는 최소단위(이하 “회계정리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6조(유형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형태별 분류는 회계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제9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①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급여, 잡급, 퇴직급여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 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등

마. 전과사용료

바. 제세공과금등

사. 소모품비

아. 지급임차료

자. 수선유지비

차. 차량비

카. 보험료

타. 지급수수료

파. 교육훈련비

하. 접대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등

4.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 무형자산의 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연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 부담금
9. 접속료: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0. 내부거래비용: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 업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업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업무 및 서비스가 제공 업무 및 서비스에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 ①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내부거래라 한다.

② 전송업무 및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업무의 서비스간의 내부거래를 인식하며 내부거래 단가는 해당연도의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제11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제13조(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

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교환설비중 교환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전송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송설비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선로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선로설비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4. 단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단말장치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5. 정보처리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전원기능설비: 회계규정 제8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기통신공통설비: 전기통신설비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설비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

1. 교환기능설비

가. 단국교환설비

나. 이동단국교환설비

다. 이동중계교환설비

라.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마. 탄뎀교환설비

바. IGS교환설비

사. 시외교환설비

아. 국제교환설비

자. 데이터교환설비

차. 교환기능공통설비

2. 전송기능설비

- 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
- 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 다. 시내중계전송설비
- 라. 0x 회선중계전송설비
- 마.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
- 바. 시외중계전송설비
- 사. 00x 회선중계전송설비
- 아. 국제중계전송설비
- 자. 이동중계전송설비
- 차. 전송기능공통설비

3. 선로기능설비

- 가. 가입자 선로설비
- 나. 가입자중계선로설비
- 다. 기지국중계선로설비
- 라. 시내중계선로설비
- 마. 시내접속중계선로설비
- 바. 0x 회선중계선로설비
- 사. 시외중계선로설비
- 아. 00x 회선중계선로설비
- 자. 국제중계선로설비

차. 이동중계선로설비

카. 선로기능공통설비

제15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통신망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와 회계규정 제9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16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13조 및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교환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

여 발생한 비용

2. 전송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선로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단말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정보처리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전원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9. 판매영업기능비용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 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2008.3.27.이전의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에서 허용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만 집계한다.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다만, 콜센터(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비용은 별도

구분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 비용 :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수납비용 :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 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1. 일반관리기능비용 :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2.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다.

③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액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⑤ 제9조제3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

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중 2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19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 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0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회계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20조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 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④ 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운영 공통비는 교환기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3.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③ 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 공통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④ 단말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단말기능의 역무별 직접비 금

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⑥ 전원운영 공통비는 전원기능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 역무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역무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 :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26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 비용 : 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제27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8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기업이미지 광고기능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29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23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액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제32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접속료는 역무별로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 수익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중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 법인세비용은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① 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② 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2. 사용시간, 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서비스별 사용량으로 배부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역폭 비율로 배부

③ 선로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 ④ 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 ⑤ 정보처리기능설비는 역무별 대역폭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 ⑥ 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후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제15조에 따른 일반지원 자산의 역무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제33조(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1조 및 제32조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역무별 분류는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역무별 배부는 제3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총괄원가) 전기통신역무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3. 판매촉진비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 등 전기통신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6장 보칙

제40조(배부기준등의 적용)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제시한 배부기준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사항은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
6. 제14조에 따른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 까지 수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월이내
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
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
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④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과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
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서의 검증등)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분리지
침서 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44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
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

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역무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 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제각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매각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통계의 보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후 7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만 보고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4.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5. 판매업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 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별지 제10-2호 서식)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

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8-64호, 2008.5.1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2007 회계연도의 신규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3호, 2009.12.30.>

이 고시는 2009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부터 적용·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단위 :원)

계 정 과 목	제 X(당)기	제 X(전)기
자 산		
I.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A. 전기통신사업유형자산		
가. 사용중인 유형자산		
1. 전기통신설비		
1) 교환설비		
<감가상각누계액>		
2) 전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3) ...		
2. 일반지원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		
3. 미 착 자 산		
4. 건 설 중 인 자 산		
나.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		
1.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		
B.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자산		
1.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 무형자산

A. 전기통신사업무형자산

가. 사용중인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
2. ...

나.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1.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B.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무형자산

1.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자산

(3) 투자자산

A. 전기통신사업투자자산

1. 임차보증금

B.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투자자산

1. 임차보증금
2. 장기금융상품
3. ...

(4) 기타비유동자산

1. 이연법인세자산
2. ...

II. 유 동 자 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등가물
2. 단기금융상품
3. 유가증권
4. 매출채권
 - 1) 외상매출금
 - 2) 받을어음
 - 3) 대손충당금

- 5. 단기대여금
 - 1) 단기대여금
 - 2) 대손충당금

6. ...

(2) 재고자산

A. 전기통신사업 상품 등 재고자산

1. 상품 등 재고자산

- 1) 상품
- 2) 저장품
- 3) 미착품
- 4) ...

2. 폐품 및 불용품

B.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상품 등 재고자산

1.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자산

자 산 계
부 채

I. 유동부채

- 1. 매입채무
- 2. 단기차입금
- 3. 미지급법인세
- 4. 미지급배당금
- 5. 유동성장기부채
- 6. XX충당금
- 7. ...

II. 비유동부채

- 1. 사채
- 2. 장기차입금
- 3. 장기성매입채무
- 4. XX충당금
- 5. 이연법인세부채

6. ... 부 채 계 자 본 I.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기타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배당건설이자 3. 자기주식 4.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해외사업환산손익 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4. ...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자 본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

■ 작성지침

1.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단위 :원)

계 정 과 목	제 X(당)기	제 X(전)기
I. 영업손익		
가. 영업수익		
A. 전기통신사업 영업수익		
1. 요금수익		
2. 접속료수익		
3. 국제정산수익		
4.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5. 기타영업수익		
6. 내부거래수익		
7. 자가소비사업용수익		
B.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영업수익		
나. 영업비용		
A. 전기통신사업 영업비용		
1. 인건비		
2. 경비		
3. 설비사용료		
4.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		
9. 접속료		

10. 내부거래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비용 B.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영업비용 II. 영업외손익 가. 영업외수익 나. 영업외비용 III. 특별손익 및 법인세비용 가. 특별이익 나. 특별손실 다. 법인세 비용 IV. 당기순이익		
--	--	--

▣작성지침 :

1. 전기통신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영업외 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은 구분 기재할 수 있으며, 각 계정과목중 회계분리상 중요한 과목은 세부내역을 별도 표시하거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p>일반 지원 자산 등 운영 비용</p>	<p>(1)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운영비용 (2) 판매영업기능자산 운 영비용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 산 운영비용 (4)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 능자산 운영비용 소계</p>	<p>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p>												
<p>판매 영업 기능 비용</p>	<p>(1) 판매촉진비 가. 광고선전비 나. 광고선전비외의 판매 촉진비 (2)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소계</p>	<p>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p>												
<p>고객 서비 스 기능</p>	<p>(1) 가입자관리비용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p>	<p>직접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p>												

국제정산부담금		직접비 공통비 계														
접속 료	(1) 접속설비비	직접비 공통비 계														
	(2) 접속통화료	직접비 공통비 계														
	(3) 접속통신료	직접비 공통비 계														
	(4) 부대서비스비	직접비 공통비 계														
내부거래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영업비용 합계		직접비 공통비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판매영업기능비용														
(1) 광고선전비														
(2) 판매촉진비														
(3)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소계														
고객서비스기능비용														
(1)가입자관리비용														
(2)마일리지·멤버쉽관리비용														
(3)청구수납비용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2. 배부기준은 결합판매서비스만의 배부기준에 한한다. 예를 들어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인 역무별 요금수익은 결합판매로 인한 개별 서비스의 결합판매 요금수익을 의미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역무별 영업외손익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배부방법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1. 영업외수익															
(1) 유형자산 처분이익	직접비 공통비 계														
소 계															
2. 영업외비용															
(1) 출연금	직접비 공통비 계														
(2) 유형자산 처분손실	직접비 공통비 계														
(3) 보편적역무손실보 전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4) 법인세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소 계															
3.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 합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17) 잡비	공통비																			
	계																			
	직접비																			
	공통비																			
	계																			
	경비 합계																			
	인건비 및 경비 합계																			

■ 작성지침

1. 기능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내부거래 수익 및 비용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내부거래제공서비스 내부거래이용서비스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부가통신역무	내부거래비용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1. 전송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3. 부가통신 역무 내부거래수익 합계										

▣ 작성지침

1.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 내부거래를 인식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수익 및 비용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제공서비스 자가소비사업용 거래 이용서비스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 역무	자가소비사 업용비용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1. 전송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 는 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4. 부가통신역무 자가소비사업용수익 합계														

소계																		
4. 감가상각비	직접비 공통비 계																	
5. 무형자산상각액	직접비 공통비 계																	
6. 대손상각비	직접비 공통비 계																	
7. 경상개발비및연구비	직접비 공통비 계																	
8. 국제정산부담금	직접비 공통비 계																	
9. 접속료	직접비 공통비 계																	
10. 내부거래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11. 자가소비사업용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전용회선료 및 선로설비사용료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세분류하여 작성한다.
2. 특수관계에 의한 설비사용료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10-1호 서식)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의 형태별 영업비용 역무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계 정 과 목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 서비스	소계			
1. 인건비														
(1) 급여														
(2) ...														
(3) ...														
소계														
2. 경비														
(1) 복리후생비														
(2) ...														
(3) ...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10-2호 서식)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세부계정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판매 영업 기능 비용	I.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1.신규모집수수료														
		2...														
		3...														
		소계														
	II.통신단말장치 구입지원비용	1...														
		2...														
		3...														
		소계														
계																
고객 서비스 기능 비용	I.가입자관리비용	1.업무취급수수료														
		2. ...														
		소계														
	II.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1...														
		2...														
		소계														
	III.청구수납비용	1...														
		2...														
계																
합계																

■ 작성지침

1. 세부계정은 재무회계상 가장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역무별로 직접 할당되는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작성한다.
2. 각 기능별로 공통비 배부금액이 있거나 금액이 미미할 경우 세부계정을 '기타'로 구분한다.
3. 세부계정에 대한 해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형태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취득가액				당기상각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초	기말
전기통신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단말설비 정보처리설비 전원설비 소계								
일반지원자산등	토지 건물 건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미착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주파수이용권 산업재산권 차지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유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타계정대체내역 등 세부자산 증감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기능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취득가액				당기상각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초	기말
전기통신설비	교환기능 설비 전송기능 설비 선로기능 설비 단말기능 설비 정보처리기능 설비 전원기능 설비 소계								
일반지원자산등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기업이미지지원기능 자산 소계								
미착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기업이미지지원기능 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미착자산과 건설중인자산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일반 지원 자산 등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공통비 계 직접비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공통비 계 직접비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공통비 계 직접비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공통비 계 직접비																
	소계	공통비 계																
무형 자산	(1)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자산	직접비 공통비 계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직접비 공통비 계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직접비 공통비 계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직접비 공통비 계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직접비 공통비 계																
소계	직접비 공통비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4-2호 서식)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역무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통신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유형자산등 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배부방법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2) 전송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3) 선로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가. 가입자선로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나. 중계선로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4) 단말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5) 정보처리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6) 전원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5-2호 서식)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통신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지원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유형자산등 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배부방법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2) 전송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3) 선로기능설비	직접자산														
	가. 가입자선로	공통자산 계														
	나. 중계선로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4) 단말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5) 정보처리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6) 전원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공통자산 계													
	소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임차보증금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재고자산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6-2호 서식)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통신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지원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IV. 회선수 (1) 1/4분기 (2) ……														
V. 통화량 (1) 1/4분기 - 발신 - 착신 - 망내 (2) ……														
VI. 고용인원수 (1) 1/4분기 (2) ……														

▣ 작성지침

1. 가입자수는 분기말 누적가입자 수를 의미한다.
2. 회선수는 E1급으로 환산된 누적 회선수를 의미한다.
3. 통화량은 분단위로 기재한다.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 000은
본 영업보고서가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 또는 왜곡 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_____

대표이사 : _____ (서명 또는 인)

회계담당임원 : _____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